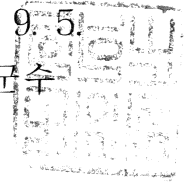
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57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9. 5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## 1. 제안이유

가창체육공원 풋살 전용구장 및 기존 풋살장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미반영 체육시설을 추가 및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안 제14조제1항제8호 사용료 감면율 조정
  -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: 전액 → 80% 이내
- 안 별표 1(명칭 및 위치) 현행화
- 안 별표 2(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) 개정

## 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- 1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
- 2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
- 3)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 제11조, 제1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불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3. 8. 4. ~ 8. 24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특기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8호 중 “전액”을 “80%이내”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(제3조 관련)

명 칭	위 치	주요 시설
국 민 체 육 센 터	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	- 수영장, 헬스장, 에어로빅장
군 민 운 동 장	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-10	- 축구장, 정구장, 배구장(족구장), 게이트볼장
군 민 체 육 관	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30	- 다목적체육관, 다목적강당, 문화강의실 생활체육공간
논 공 축 구 장	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0	- 축구장(풋살장), 테니스장
구 지 축 구 장	달성군 구지면 내리 840	- 축구장
화 원 테 니 스 장	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58	- 실내테니스장, 실외테니스장
다 사 매 곡 테 니 스 장	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42	- 테니스장
현 풍 테 니 스 장	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	- 테니스장
화 원 게 이 트 볼 장	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253	- 게이트볼장
다 사 체 육 공 원	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441	- 축구장, 테니스장, 농구장, 족구장, 히딩크드림필드 풋살장, 다목적트랙, 어린이놀이터, 광장, 야외무대. 산책로
가 창 체 육 공 원	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604	- 축구장, 테니스장, 농구장, 족구장, 풋살장, 다목적트랙, 어린이놀이터, 광장, 지압보도
명 곡 체 육 공 원	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12	- 인라인스케이트장, X-게임장, 인공암벽, 다목적운동장(축구장)
달 성 스포츠 파크	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70	- 축구장, 테니스장, 전천후게이트볼장, 족구장, 농구장, 다목적체육관
진 천 천 파 크 골 프 장	화원읍 구라리 188-1	-파크골프장
논 공 위 천 파 크 골 프 장	논공읍 위천리 651	-파크골프장
달 성 보 파 크 골 프 장	논공읍 남리 1	-파크골프장
가 창 파 크 골 프 장	가창면 옥분리 778-7	-파크골프장

명 칭		위 치	주요 시설
유 가 한 정 파 크 골 프 장		유가읍 한정리 596-1	-파크골프장
구 지 평 촌 파 크 골 프 장		구지면 평촌리 1-43	-파크골프장
강 변 체 육 시 설	낙 동 강	달성강변야구장	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552-1번지 - 야구장, 선수대기실
		하빈지구 체육시설	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200-3번지 - 야구장, 축구장, 농구장, 족구장
	금 호 강	금호강변 체육시설	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54-1번지 - 축구장, 족구장, 농구장 - 배드민턴장, 게이트볼장 - 기타체육시설(파크골프장, 다목적트랙 등)

【별표 2】

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 (제11조 관련)

구 분	사 용 구 분		체 육 경 기		체 육 경 기 외		
			평 일	토·공휴일	평 일	토·공휴일	
군 민 체 육 관	전 용 사 용	체 육 관	주 간 (1시간)	50,000	60,000	70,000	80,000
			야 간 (1시간)	60,000	80,000	80,000	100,000
		다 목 적 강 당	주 간 (1시간)	40,000	50,000	60,000	70,000
			야 간 (1시간)	50,000	70,000	70,000	90,000
	강 습 료	단 체 강 습	월 70,000 (주 3회)			-	
			월 60,000 (주 2회)				
			월 50,000 (주 1회)				
	회 원 권	개 인 강 습 (1회 20분)	월 150,000 (주 3회)			-	
			1일 회원 (2시간)	5,000		-	
			월 회원 (주5회, 1개월, 1일 2시간)	30,000		-	
가 체 육 공 원	축 구 장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	
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	
	풋 살 장	주 간 (1시간)	40,000	50,000	-		
		야 간 (1시간)	50,000	60,000			
다 체 육 공 원	축 구 장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	
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	
	히 딩 크 드림 필드 풋살 장	주 간 (1시간)	40,000	50,000	90,000	120,000	
		야 간 (1시간)	50,000	60,000	120,000	180,000	
명 체 육 공 원	인 라 인 스 케 이 트 장	주·야간	-	-	-	-	
		다 목 적 운 동 장 (축구장)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
	야 간 (2시간)	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	
군 민 운 동 장		주·야간	-	-	-	-	
논 축 구 장	축 구 장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	
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	
	풋 살 장	주 간 (1시간)	40,000	50,000	105,000	135,000	
		야 간 (1시간)	50,000	60,000	135,000	165,000	

구 분	사 용 구 분		체 육 경 기		체 육 경 기 외		
			평 일	토·공휴일	평 일	토·공휴일	
구 축 구 장	축 구 장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	
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	
강 변 야 구 장	마 사 토	주 간 (2시간)	45,000	70,000	90,000	140,000	
	인 조 잔 디		65,000	90,000	150,000	200,000	
달 성 스포츠 파크	주 경기장	축 구 장	주 간 (2시간)	80,000	120,000	300,000	500,000
			야 간 (2시간)	120,000	180,000	500,000	800,000
	보조 경기장	축 구 장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
	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
	다 목 적 체 육 관	전용 사용	주간 (1시간)	40,000		-	
			야간 (1시간)	50,000		-	
		강습료	단체강습 (1회 1시간)	월 90,000 (주 3회)		-	
				월 70,000 (주 2회)		-	
		개인강습 (1회 20분)	월 120,000 (주 3회)		-		
			월 100,000 (주 2회)		-		
개인 사용	1일 회원 (2시간)	5,000		-			
	월회원 (주5회, 1개월, 1일 2시간)	50,000		-			
하빈지구 체육시설	야 구 장	주 간 (2시간)	45,000	70,000	90,000	140,000	
	축 구 장	주 간 (2시간)	35,000	50,000	100,000	150,000	
	농 구 장	주·야간	-	-	-	-	
	족 구 장	주·야간	-	-	-	-	

구 분	사 용 구 분		체 육 경 기		체 육 경 기 외	
			평 일	토·공휴일	평 일	토·공휴일
실외 테니스장 (가창체육공원, 다사체육공원, 화원테니스장, 다사매곡테니스장, 군민운동장, 현풍테니스장, 달성스포츠파크, 논공축구장 내)	개인	주 간 (2시간)	면당 12,000	면당 16,000	면당 24,000	면당 32,000
		야 간 (2시간)	면당 24,000	면당 28,000	면당 48,000	면당 56,000
	단체	주 간 (1개월, 1일 3시간)	면당 150,000	-	-	-
		야 간 (주1회,1개월, 1일 3시간)	면당 100,000	-	-	-
실내 테니스장 (화원테니스장)	개인	주 간 (2시간)	면당 28,000	면당 34,000	-	-
		야 간 (2시간)	면당 34,000	면당 44,000	-	-
	단체	주 간 (주1회,1개월, 1일 3시간)	면당 150,000	-	-	-
		야 간 (주1회,1개월, 1일 3시간)	면당 180,000	-	-	-
테니스 강습료	실내테니스장	주 3회	180,000		-	-
		주 2회	120,000		-	-
	실외테니스장	주 3회	130,000		-	-
		주 2회	75,000		-	-
	1일 강습료 (1회 20분)	실내테니스장	20,000		-	-
		실외테니스장	15,000		-	-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·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%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.(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)</li> <li>2. 군(위탁기관 포함)에 등록된 군(민)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·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%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.(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.)</li> <li>3. 테니스장 단체는 15명,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,000원 추가 징수함.</li> <li>4.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</li> <li>5.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(월~금)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(토,일)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.</li> <li>6.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의 경우 종목당 평일(월~금)사용기준이며, 주말(토,일)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.</li> <li>7.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은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(09:00 ~ 18:00), 야간(18:00 ~ 23:00)으로 함.</li> <li>8.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(증빙서류)을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.</li> </ol>					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4조(사용료의 감면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1. ~ 7. (생 략)</p> <p>8.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: 전액</p> <p><b>【별표 1】</b>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(제3조 관련)</p>	<p>제14조(사용료의 감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----- : 80% 이내</p> <p><b>【별표 1】</b>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(제3조 관련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명 칭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위 치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주요 시설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변경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게이트볼장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가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가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 칭	위 치	주요 시설	(생 략)			변경		- 게이트볼장	추가			추가			(생 략)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명 칭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위 치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주요 시설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창체육공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604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풋살장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논공위천 파크골프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651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파크골프장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지평촌 파크골프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달성군 구지면 평촌리 1-43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파크골프장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 칭	위 치	주요 시설	(현행과 같음)			가창체육공원	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604	- 풋살장	논공위천 파크골프장	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651	- 파크골프장	구지평촌 파크골프장	달성군 구지면 평촌리 1-43	- 파크골프장	(현행과 같음)		
명 칭	위 치	주요 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변경		- 게이트볼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명 칭	위 치	주요 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창체육공원	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604	- 풋살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논공위천 파크골프장	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651	- 파크골프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지평촌 파크골프장	달성군 구지면 평촌리 1-43	- 파크골프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						개정안						
<b>【별표 2】</b>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(제11조 관련)							<b>【별표 2】</b>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(제11조 관련)						
구분	사용구분	체육경기		체육경기외			구분	사용구분	체육경기		체육경기외		
		평일	토공휴일	평일	토공휴일				평일	토공휴일			
(생략)							(현행과 같음)						
<추가> 가창체육공원	풋살장	주간 (1시간)					가창체육공원	풋살장	주간 (1시간)	40,000	50,000		
		야간 (1시간)							야간 (1시간)	50,000	60,000		
<변경> 다사체육공원	허딩크 드림월드 풋살장	주간 (1시간)	30,000	40,000			다사체육공원	허딩크 드림월드 풋살장	주간 (1시간)	40,000	50,000		
		야간 (1시간)	40,000	60,000					야간 (1시간)	50,000	60,000		
<변경> 논공체육구장	풋살장	주간 (1시간)	35,000	45,000			논공체육구장	풋살장	주간 (1시간)	40,000	50,000		
		야간 (1시간)	45,000	55,000					야간 (1시간)	50,000	60,000		
(생략)							(현행과 같음)						

□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,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2. 다음 각 목의 단체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
  - 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
  - 나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
  - 다. 삭제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
4. 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
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
6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7.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

□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5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)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,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## 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

제11조(사용료 등)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 별표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, 달성군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: 전액
2.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: 전액
3. 어린이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 행사 : 100분의 30
4. (삭제 2015.9.30)
5. (삭제 2021.6.10.)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: 100분의 50
 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「노인복지법」 제 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,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  -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다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- 라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  - 마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바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사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- 아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자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6. 국민체육센터 여성수영 율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(可妊) 여성 : 100분의 10
7.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·단체 : 전액
8.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: 전액